특정활동(E-7)

활동범위 및 해당자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고 하는 사람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3년(주무부처 추천 우수인재,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E-7 직종 종사자,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원에 대해서는 5년)
적용대상 및 도입기준 등	**1. 적용대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20. 특정활동(E-7)] ▫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 '특정활동'이란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이하 '도입직종')에서의 활동을 의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의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그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6조) ▫ **(도입직종의 유형)**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항목과 직능수준 등을 감안하여 전문직종, 준전문직종, 일반기능, 숙련기능직종으로 구분 - **(관리·전문직종)** 대분류 항목 1(관리자)과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직종(직능 수준 3, 4) 중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67개 직종*** *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 등 15개 직종 관리자와 생명과학전문가 등 52개 직종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준전문 직종)** 대분류 항목 3(사무종사자)과 4(서비스종사자), 5(판매종사자)의 직종(직능수준 2, 3) 중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10개 직종*** * 항공운송사무원 등 5개 직종 사무종사자와 운송서비스 종사자 등 5개 직종 서비스 종사자 - **(일반기능직종)** 대분류 항목 6(농림어업 숙련종사자)·7(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8(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의 직종(직능수준 2) 중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10개 직종*** * 일반 : 동물사육사, 양식기술자, 할랄도축원 등 기능원 및 관련 기능인력 - **(숙련기능직종)** 대분류 항목 6(농림어업 숙련종사자)·7(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8(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의 직종(직능수준 2) 중 점수제를 적용하는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3개 직종*** * 점수제 : 농림축산어업, 제조, 건설 등 분야 숙련기능인력

목차

적용대상 및 도입기준 등

신 약호	분류기준	참고
E-7-1	전문인력	관리자 및 전문가 (67개 직종)
E-7-2	준전문인력	사무 및 서비스종사자 (10개 직종)
E-7-3	일반기능인력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10개 직종)
E-7-4	숙련기능인력(점수제)	'17.8.1신설 (3개직종)
E-7-91	FTA 독립전문가	T6(구약호)
E-7-S	네거티브 방식 전문인력	고소득자, 첨단산업분야 종사(예정)자

2. 도입직종 선정 및 관리 등

- **(직종 선정)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전문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한 신규 직종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고, **외국인력 도입의 필요성 및 효과, 국민대체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

 - 수요조사 시 직종별 학력 및 경력요건, 고용업체 요건 등에 관한 의견도 수렴하고, 체류관리 상의 문제 우려 등으로 사전검토가 필요한 경우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전문인력 유치지원 실무분과위원회*의 협의결과를 참고

 * 전문인력 유치지원 실무분과위원회 (위원장 : 과기부 미래인정책국장, 위원: 기재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국가정보원·중소벤처기업부 담당과장)

 - '22. 11. 현재 87개 직종(278개 세부분류) 선정

- **(관리)** 도입직종 현황, 직종별 도입인원 등의 통계산출 및 분석, 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직종별로 코드번호 부여

 - 직종별 코드번호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소분류(세 자리 수), 세분류(네 자리 수), 세세분류(다섯 자리 수)를 기준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부여

 - 기존 직종에서 분리·신설되는 직종의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직종의 코드번호 앞에 'S'를 붙임 (예 : S ------)

- **(유사직종 도입 허용기준)** 신청직종과 가장 유사한 직종의 자격요건 등 충족여부, 도입의 필요성 및 국민대체성 등을 종합 심사하여 타당한 경우 가장 유사한 직종으로 고용 허용

 - 대분류 항목 1·2에 해당하는 전문직종은 청장 등이 재량으로 허용하고, 대분류 항목 3 - 8에 해당하는 준전문직종, 숙련기능직종은 법무부장관의 승인 필요

목차

적용대상 및 도입기준 등	

3. 도입직종별 자격요건 및 도입 방법

가. 자격요건

- **(일반요건)**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경력은 학위, 자격증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하되 첨단기술*(IT, 바이오, 나노 등) 분야 종사자에 한하여 졸업 이전 해당 분야 인턴 경력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

 *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 분야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

- **(특별요건)** 우수인재 유치 및 육성형 인재 활용 등의 차원에서 특례를 정한 우수인재와 직종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학력 또는 경력 요건을 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직종 근무경력자)** 도입직종에 정한 학력 및 경력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 **(세계 우수 대학* 대학졸업(예정) 학사학위 소지자)** 전공분야 1년 이상 경력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 타임誌 200대 대학 및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대학을 의미
 - **(국내 전문대학졸업(예정)자)**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1년 이상의 경력요건을 면제하고,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4호에 해당하는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
 - **(국내 대학 졸업(예정)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전공과목과 무관하게,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학사 이상의 경우 1년이상의 경력 요건 면제), 일/학습연계유학(D-2-7)자격 졸업자는 국민고용비율 적용을 면제함

 ※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4호에 해당하는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

◘ 목차

적용대상 및 도입기준 등

- **(주무부처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 사증 등의 우대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요건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고용추천
- **(첨단기술인턴(D-10-3) 체류자)** 첨단 기술인턴(D-10-3) 자격으로 국내 기업 등에서 1년 이상 인턴활동을 한 자가 인턴 활동 분야에 정식으로 취업하고 임금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1배 이상인 경우, 체류자격 변경 시 학력·경력 요건 면제

<첨단과학기술인력 우대 고용추천>

구 분	골드카드
고용추천기관	산업통상자원부(KOTRA)
시행연도	2000년
추천대상자 요건	▪ 동종 5년 이상 경력 ▪ 학사 + 1년 이상 경력 ▪ 석사 이상 * 국내 학위취득자는 해당 분야 경력 불요
추천대상 직종	* KOTRA :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 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 8개 분야(공·사 기관)

- **(특정 일본인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일본정보처리개발협회소속 중앙정보교육연구소(CAIT) 및 정보처리기술자시험센터(JITEC)가 인정하는 소프트웨어개발기술자와 기본정보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한 일본인에 대해서는 자격기준과 무관하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허용
- **(부처추천 전문능력 구비 우수인재)** 연간 총 수령보수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1.5배 이상이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포함)의 추천을 받은 경우 전문인력(67개 직종)에 한해 학력, 경력 모두 면제가능*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용추천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최초 허가 시 체류기간 1년만 부여하고 이후 연장 시 **반드시 세무서장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받아 실제 수령보수 등을 확인** 후 정상 절차에 따라 연장여부 결정
- **(고소득 전문직 우수인재)** 연간 총 수령보수가 전년도 1인당 국

	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 되는 경우 직종에 관계없이 학력, 경력 모두 면제가능(주무부처장관의 고용추천 불필요) - **(우수사설기관 연수 수료자)** 해외 전문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 중 해당 전공분야의 국내 연수과정(D-4-6, 20개월 이상)을 정상적으로 수료하고 국내 공인 자격증 취득과 사회통합프로그램을 4단계 이상을 이수한 외국인에 대해 해당 전공분야로의 자격변경을 허용(E-7-4 분야 제외) - **(요리사,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조선용접공 등)** 직종별 해당 기준 적용 **나. 도입 방법** **(원칙)** 기업 스스로 채용이 필요한 분야의 전문 외국인력을 발굴하여 자격검증 등을 거쳐 채용한 후 사증발급을 신청하거나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을 신청하면 법무부에서 결격여부 등을 심사하여 허용여부 결정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등)** 체류자격 변경허가 요건을 갖춘 비전문 취업자격자 등의 자격변경을 허용하고, 뿌리산업 분야 민관합동 전문가들의 기량검증을 통과한 자들로 인재 POOL을 구성하여 쿼터 범위 내에서 선발하는 방안도 허용(기존 조선용접공 도입절차 준용) **다. 고용추천서** ○ 개별 직종별 심사기준에서 고용추천서 발급 대상 및 발급 부처 등을 정하고 있음(근거 영 제7조제3,4항) ○ **(필수) 직종별 심사기준에서** 고용추천서 징구가 **“필수”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접수시 반드시 추천서가 첨부되어야 함 ○ **(면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용추천서 징구 **면제** - 대학 및 공공기관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 사기업이라도 대기업 관리자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 ○ **(전자고용추천서 시스템 운영)** 대한민국 비자포털(visa.go.kr)에 전문인력 고용추천을 위한 전자고용추천시스템 운영 **라. 첨부서류 및 신청절차** ○ **(공통 첨부서류)**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등 신청

	시에도 적정하게 준용 - 피초청(외국인)인 준비서류 : 여권사본,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고용계약서, 자격요건 입증서류(학위증,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 국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반드시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 첨부, 주요핵심 서류에 대해서는 영사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제출 - 초청인 준비 서류 : 고용단체 등 설립관련서류,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초청사유서*, 고용추천서** 등), 신원보증서(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근무처변경, 추가 신고가 제한되는 직종 종사자만 해당),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 *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 및 외국인활용계획,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고용추천 필수 직종에 한해 징구하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 발급한 추천서 징구 - 신원보증서(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근무처변경·추가 신고가 제한되는 직종의 종사자만 해당) **마. 초청자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 **(자격요건)** 특정활동(E-7) 자격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직종의 업체나 단체 등의 대표로서 아래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2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 허용직종별 고용업체 요건이나 업체당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 및 최소임금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고용업체에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심사기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대상인지 여부, 고용업체 요건 충족 및 정상 운영 여부, 저임금 활용여부 등을 종합 심사 - (창업 초기 소규모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벤처기업) 제조·무역·컨설팅·R&D 등 소규모 업체가 전문인력을 고용하고자 할 경우 창업일로부터 최대 **5년간은** 매출실적이 없어도 허용(67개 전문인력 직종만 해당) - (숙련기능인력 고용업체) 판매사무원, 주방장 및 조리사 등 숙련기능 인력들을 초청한 경우에는 직종별 심사기준에 따라 고용업체 요건 충족 및 정상 운영 여부, 저임금 활용 여부 등을 종합 심사하

	여 허가 여부 및 적정 허용인원을 판단
체류자격외 활동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09.6.15.부 시행) **2. 외국인투자기업 CEO 등 우수전문인력의 대학 강연활동** 활동범위: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활동을 하려는 자에 대한 단기취업(C-4-5)자격으로의 자격외 활동 대 상: ①투자자 등(D-7, D-8, D-9)의 자격 소지자 중 국내기업(투자기업포함)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는 자 ②전문인력(E-1, E-3 ~ E-5, E-7) 자격소지자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주무부처 장의 고용추천서 ③사업자등록증 사본 ④고용계약서 ⑤원 근무처장의 동의서 **3. "주한외국공관원 가족" 의 국내취업은 상호주의에 따라 외교부장관(외교사절담당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여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취업허용 국가 : '18. 6월 현재 27개 국가 일본,스리랑카,방글라데시,이스라엘,미국,**캐나다**,독일,영국,프랑스,스웨덴,체코,폴란드,러시아,네덜란드,벨기에,헝가리,뉴질랜드,덴마크,노르웨이,아일랜드,호주,파키스탄,인도,싱가폴, **포르투갈, 스위스, 콜롬비아('18.6월)** 취업허용 범위 ‣ 각급 대학, 학원 등에서 외국어강의(E-2) ‣ 영화, TV단역 출연 등 문화활동 관련 직종(E-6), 문화연구언론기관등의 교열·통역·번역 등 외국어관련 직종 및 외국인 학교 교사(E-7), 기타 내국인 대체불능 직종 ‣ D-1, D-6, E-1, E-3 ‣ E-7중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의 국내 채용 필수전문인력, 외국계 회사의 경영자문 컨설턴트 등의 직종 **※ 주한캐나다대사관 공관원가족에 대한 자격외활동허용범위 확대('09.3.9)** - 단순노무분야(D-3, E-9, E-10, H-2 등)을 제외한 모든 체류자격(기준충족자) **4. "A-1, A-2 소지자" 에 대한 자격외활동 허가 범위(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위임)**
체류자격외 활동	

취업허용 범위

- 외국어회화강사(E-2), 외국인학교교사(E-7), 외국어교열요원(E-7)으로의 활동, 문화예술(D-1), 종교(D-6), 교수(E-1), 연구(E-3), 주한외국공관이나 외국기관 등에서 고용하는 행정요원(E-7),특정활동(E-7)중 벤처기업 등의 정보기술(IT)·E-business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 소관부처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자

외교부(외교사절담당관)에서 받은 고용추천서 필수

해당 자격 입증 서류 : 해당 체류 자격의 자격외활동서류

5. 고액투자외국인 및 전문인력 배우자에 대한 취업

가. 허용대상

고급과학기술인력(SCIENCE 카드) 및 첨단기술인력(GOLD 카드), 정보기술인력(IT카드)자격 소지한 전문 외국인력의 배우자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법인포함)한 투자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전문 외국 인력자격(E-1, E-2, E-3, E-4, E-5, E-6-2를 제외한 E-6, E-7)소지자의 배우자

나. 허용분야

단순노무(D-3, E-9) 등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다. 허가기간 : 배우자의 체류기간까지(계속연장 가능)

라. 제출서류 : 규칙 제76조에 의한 체류자격별 첨부서류(신원보증서 생략)

※ 특정활동(E-7)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7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지침 준용

◘ 목차

체류자격외 활동

6.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유학(D-2), 일반연수(D-4) 및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으로의 자격외 활동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주무부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필요성 입증서류 ③ 고용계약서
④ 사업자등록증 ⑤ 학위증 또는 자격증

7. 방문동거(F-1), 동반(F-3)자격 소지자의 외국어회화강사(E-2), 외국인학교교사(E-7)로의 자격외 활동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④ 해당국교원 자격증 원본(교원자격증이 없는 경우 '학위증 및 경력증명서') ⑤범죄경력증명서(E-2 자격요건과

	동일) ⑥채용신체검사서(E-2 자격요건과 동일) ⑦학교장 요청서 ⑧외국인교사 현황 **8. 방문동거(F-1), 동반(F-3)자격 소지자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외국어교열요원(E-7)**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추천서(해당 기관장) ⑤ 학위증(원본 및 사본) **9. 제주영어교육도시 종사자에 대한 체류자격외활동허가 특례** **가. 국제학교의 보조교사, 강사, 보조사감, 행정사무원** - **(자격요건)** 국제학교 재학생 부모나 교직원의 직계 가족, 18세 이상 해외 본교 졸업생으로서 학사 이상 학위 소지 또는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 또는 TESOL 등 영어교육관련 자격증 소지 **나.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점 등 상업시설의 판매종사자** - **(자격요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 국민인 국제학교 재학생 부모나 교직원의 가족, 18세 이상 해외 본교 졸업생은 별도 자격요건 없이 허용* * 단,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인 재학생 부모나 교직원의 가족, 해외 본교 졸업생에 대해서는 공인영어시험 TOEIC 800점 이상 또는 TESOL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
근무처의 변경·추가 **근무처의 변경·추가**	**1. 근무처변경 추가 신고** **사전 허가대상**: 기계공학기술자(2351), 제도사(2395), 해외영업원(2742) 중 해외 온라인상품판매원, 디자이너(285), 판매사무원(31215), 주방장 및 조리사(441), 고객상담사무원(3991), 호텔접수사무원(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양식기술자(6301), 조선용접공(7430), 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S610),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S700)] **사후 신고대상**: **상기 직종을 제외한 특정활동(E-7)** ➡ **'10.11.15.부 사후 신고제로 개정**(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 목차

전문인력 활용도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기존 사전허가를 사후신고만으로 근무처를 변경·추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법무부고시 제11-510》

※ 주방장 및 조리사의 경우 원 근무처 외 타 근무처에서의 근무시간은 원 근무처 근무시간의 1/3을 초과하지 못함

가. 자격요건

- 판매사무원 등 14개 직종을 제외한 특정활동(E-7) 자격 소지자로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하고 있는 자로 변경·추가되는 근무처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자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자로서 원고용주의 이적동의를 받지 못한 자는 제외

나. 신고절차 등

- 신고의무자(외국인)는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에게 신고(대리인의 신고 허용)

 ※여권에 근무처변경·추가신고 스티커나 신고인을 부착 또는 날인·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방문신고를 원칙**으로 함

- 선의의 고용주 보호와 체류질서 유지 차원에서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경우에는 원 고용주의 동의가 없으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 (근무처변경허가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대상자임)

다. 제출서류

①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제34호의2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주무부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③ 고용계약서 ④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⑤고용계약서 ⑥사업자등록증

※ 사유서와 신원보증서는 원칙적으로 제출 생략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는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하며, 원 근무처의 휴·폐업 및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증서류 또는 사유서로 대체 가능

2. 근무처 변경 추가 허가

	가. 적용대상자 ▫ 고용업체별 허용인원 제한 등이 있어 사전관리가 필요한 기계공학기술자(2351), 제도사(2395), 해외영업원(2742) 중 해외 온라인상품판매원, 디자이너(285), 판매사무원(31215), 주방장 및 조리사(441), 고객상담사무원(3991), 호텔접수사무원(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양식기술자(6301), 조선용접공(7430), 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S610),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S700)] **나. 제출서류** ① 휴·폐업사실증명서, 임금체불 관련 공적 입증서류, 매출감소 등 경영악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부가세신고서 등 (해당서류 중 1종) ② 원 고용주의 이적동의서 (휴·폐업, 임금체불 등 부당행위, 고용계약 조건 위반 행위, 고용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근무한 경우는 제외) ③ 새로 고용 계약한 업체의 자격요건 등을 심사할 수 있는 서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에 준하여 제출)
체류자격 부 여	▫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변경허가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1. 체류자격변경허가 일반기준** ▫ 허용대상 - 특정활동(E-7) 자격 허용직종별 요건을 갖춘 체류외국인 ※ 단기체류(B계열, C계열), 기술연수(D-3),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체류자격은 자격변경 제한 ▫ 첨부서류 및 확인사항, 심사기준 등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첨부서류 및 심사기준 등을 준용 ▫ **국민대체성, 국익, 업체운영 실태 및 국민고용 등과 연계하여 고용의 필요성과 신청인원의 적정성 심사** -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 E-7외국인 고용을 허용 ▸ 5명 미만의 국민을 고용 중인 내수 위주 업체 또는 현재 고용 중인 E-7 자격자가 총 국민고용자의 20%를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및 대체인력 초청과 체류자격변경, 근무처변경·추가 등을 원칙적으로 불허

▸ 단, 주무부처(KOTRA, 한국무역협회) 등의 추천이 있는 경우 첨단산업분야는 총 국민근로자의 50% 범위 내에서, 특수 언어지역 대상 우량 수출업체는 총 국민근로자의 70% 범위 내에서 청장 등이 추가 고용을 허용하고, 별도 기준이 있는 직종의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

-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일/학습연계유학(D-2-7)'자격 졸업자는 모든 직종(전문/준전문/숙련기능)에 대해 국민고용비율 적용을 면제함

- 저임금 편법인력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급이 당해연도 최저임금 기준 미만일 경우 발급 제한

ⅰ) 전문인력 : 전년도 국민 1인당 GNI의 80% 이상

ⅱ)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 : 최저임금 이상 적용

ⅲ) 단, 일부직종에 대해서는 해당 직종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따름

→ 반드시 고용계약서에 월 기본급 대비 근로시간을 명시하여야함(최저임금 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 1일 및 월간 근무시간 명시 등)

2.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체류자격으로 합법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 및 그 동반 배우자(F-3) ➡ 특정활동(E-7)자격으로의 변경

*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하는자(E-6-2)는 제외

가. 자격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취업활동을 하려는 분야가 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예술흥행(E-6)·**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해당 자격요건 등을 구비하여야 함

② 취업하려는 해당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목차

나.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고용업체 등 설립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
④ 경력증명서 ⑤ 주무부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⑥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

※ 국내 전문학사 및 학사학위 소지자는 학사 + 1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되는 직종에 대해서도 취업허용 및 고용추천서 제출 생략(단, 고용추천 필수 직종은 제외)

3.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가. 허가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

나. 허가기간 : 체류자격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4. 외국인학교 교사(E-7)로의 자격변경

가. 대 상

- 소지하고 있는 사증에 관계없이 외국인학교 교사로 근무하기 위해 채용절차를 밟고 있는 합법체류자

나. 체류허가 기간

- 최초 체류자격 변경 시 : 고용계약기간을 감안하여 1년 범위 내
- 체류기간 연장 시 : 고용계약기간을 감안하여 2년 범위 내에서 부여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해당국 교원자격증(교원 자격증이 없는 경우 '학위증 및 경력증명서') ④ 학교장 추천서 ⑤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해당자) ⑥ 신원보증서 ⑦ 학교설립관련 서류 ⑧ 범죄경력증명서(E-2 자격과 동일) ⑨ 채용신체검사서

⑩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

※ 아래 자율검증대상자는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면제됨

> 해당국 교원자격증 소지자, 채용박람회를 통해 채용된 교사, 최근 5년 이내 국내에서 회화지도강사(E-2) 또는 외국인교사(E-7)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 채용신체검사서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 별지서식기준에 해당하는 신체검사와 마약검사(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는 필수 검사항목) 결과를 포함해야 하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것

5. 부득이한 사유로 무사증 입국하거나 비취업사증을 소지한 첨단기술분야 외국 우수인력에 대한 특정활동(E-7) 자격으로의 변경허가

가. 대 상

- 벤처기업 등 제조업체의 IT분야에 근무하고자 하는 자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 전자상거래 및 정보기술 관련지식을 겸비하고 e-business 등 IT응용산업 분야에 근무하고자 하는 자 ▪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신소재분야(금속·세라믹·화학), 수송기계, 디지털전자, 환경·에너지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나. 자격 기준** ▪ 정보기술(IT) 및 전자상거래와 기업정보화(e-business) 등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동 관련학과의 학사이상 학력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단 국내에서 4년 전 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분야 종사경력 불요 ▪ 관련학과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다.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경력증명서(학사이상 학위소지자는 학위증 사본 첨부) ④ 사업자등록증 ⑤ 소관부처장관의 고용추천서 ⑥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 **6. 비전문취업(E-9) 자격 등으로 4년 이상 제조업 등에 합법취업 중인 자로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특정활동(E-7-4) 체류자격 변경허가 ('23.9.25. 개선 시행)** **※ 허가대상 등 세부사항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공지사항 참조**
체류기간 연장허가	**1. 제출 서류 및 확인사항** **가.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개인 소득금액 증명(필수)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속회사 발급)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⑤ 신원보증서 원본(아래 직종에 한해 징구)

기계공학기술자(2351), 제도사(2395), 해외영업원(2742) 중 해외 온라인상품판매원, 디자이너(285), 판매사무원(31215), 주방장 및 조리사(441), 고객상담사무원(3991), 호텔접수사무원(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양식기술자(6301), 조선용접공(7430), 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S610),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S700)]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⑦ 고용주 납부내역증명,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정상영업 및 세금체납여부확인)

2. 협정상 사증·체류허가 특례적용대상자에 대한 특례사항 규정

가.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 독립전문가(IP)

적용대상

- 국내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와 **서비스공급계약**을 체결한 전문가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협정상 양허직종(162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공급계약'을 체결한 독립전문가에게만 적용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E-7 허용직종에서 취업하는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E-7지침 일반 적용)

사증특례

-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체류기간으로 하는 단수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계약기간이 1년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부여)

체류특례

- 체류기간연장허가, 근무처변경·추가허가,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제한 (사고·질병 등 인도적 사유로 체류허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일반 체류지침에 따라 처리)

나. 한·러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 : 국내 채용 전문인력

적용대상

- 모회사의 국내지사·지점, 연락사무소, 자회사, 계열회사의 직원으로 **국내**에서 **채용**되고 해당 직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국내업체 등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E-7허용직종에서 취업하는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E-7지침 일반 적용 (복수사증 발급 및 체류허가 등 우대)

사증·체류

◘ 목차	- 1년 유효한 복수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고, **1회에 한해 6개월간 체류기간연장*을 허용하며 가족동반은 허용하지 않음** * 외국인등록일 기준 직전 입국일로부터 최장 1년 6개월까지만 체류가능하며, 귀국 후 본사에서 다시 주재원 등으로 파견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류자격의 사증(D-7 또는 D-8) 발급 **3.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파견되는 구성원, 외국법자문사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파견되는 사무직원** 가.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국내 법률사무소 설립관련 서류 ③ 고용계약서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2. 복수재입국허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는 복수재입국제한. 단, 동 국가의 국민 중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는 가능)** -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을 하려는 경우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외국인등록	**1.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①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③채용신체검사서(외국인학교 등의 교사만 해당) ④체류지 입증서류 **2.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신고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나.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 변경관련 입증서류
기타 참고사항	**1.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 **(적용원칙)**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국민대체가 어렵고, 국부창출 및 고용창출에 기여도가 높은 점 감안하여 임금요건 기준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음 ① 아래 각호의 경우 예외적으로 국민고용보호심사 기준 적용 ⅰ) 전문인력 중 초청장 남발 우려가 있는 기계공학 기술자, 제도사, 여행상품개발자, 해외영업원, 통·번역가 등에 대해서는 국민고용보호 심사 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 ⅱ) 전문인력중 국민고용보호 직종과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은 국민고용 침해 소지가 없도록 고용업체 자격요건 및 업체당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 상한, 최저 임금요건 등을 설정하여 적용 ② 위 ①의 ⅰ), ⅱ)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의 경우 직종에 관계없이 일반원칙에 따라 업체규모·고용비율 등 국민고용 보호를 적용하지 않음 ⅰ)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또는 근무처추가를 받아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ⅱ)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일/학습연계유학(D-2-7)' 자격 졸업자는 전문/준전문/일반기능에 대해 국민고용비율, 업체규모 적용을 면제하고 유사직종을 폭넓게 적용하여 허용 ○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일반 심사기준** - **(고용업체의 규모)**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초청을 제한, 고용인원은 고용부의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말함 ☞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야 되므로 원칙적으로 개업 후 최소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 **(고용업체의 업종)** 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고용업체 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외국인 고용비율)** 국민고용 보호 직종은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 ※ 숙련기능인력(E-7-4),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은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하되,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1~3) 등 취업 가능 체류자격은 외국인 고용인원에 포함하여 비율 산정 ※ 내국인 고용 입증은 고용보험관련 서류 제출(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고용,신설 기업이라도 내국인 고용비율이 적용되는 업종은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일 기준 3개월이 지난 후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 총 국민고용자의 20%를 초과하여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대상 E-7 외국인을 고용 중인 업체는 신규 및 대체인력 초청과 체류자격변경, 근무처변경.추가 등을 원칙적으로 불허 - **(임금요건)** 저임금 편법인력 활용 방지를 위해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동일 경력 내국인의 평균임금과 연계하여 전문인력 수준에 따라 직종별로 차등 적용하여 심사 ⅰ) 전문인력 : 전년도 국민 1인당 GNI의 80% 이상 ⅱ)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 : 최저임금 이상 적용 ⅲ) 단, 일부직종*에 대해서는 해당 직종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따름 - **(중소·벤처·비수도권 중견기업 특례)*** 고용 외국인 중 전년도 GNI의 80% 이상 임금 요건이 적용되는 직종에 종사 예정이고, 국내 기업 등에서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근무한 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인 자에게 완화된 임금 요건 적용**(전년도 GNI의 80% 이상 → 전년도 GNI의 70% 이상)** * ①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로 확인되는 기업, ②벤처기업법 상 '벤처기업 확인서'로 확인되는 벤처기업 ③중견기업법 상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되는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 ** 전문인력(E-7-1) 67개 직종 및 일반기능인력(E-7-3) 중 조선용접공, 선박도장공 등 **【 임금요건 심사 기준 】** ◦ **제출서류 :** 계약서, 세무서 발행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기간연장, 근무처 변경 시 필수) ◦ **전년도 국민1인당 GNI :**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며, 한국은행 홈페이지 통계사이트에 매년 공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함. 신청일 기준으로 공시금액을 기준으로 함 ◦ **당해연도 최저임금 :** 최저임금법(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경 고시하는 금액에 따르며, 별도 규정이 없으면 1월1일부터 해당 연도 최저임금을 적용 ◦ **고용계약서 :** 반드시 고용계약서에 월 기본급 대비 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하여 최저임금 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1일 및 월간 근무시간 명시) ◦ **심사기준 적용** - '임금'요건 심사 시 원칙적으로 기본급을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통상임금도 인정 - 시급 및 월급 모두 최저임금 요건을 충족할 것, 근무시간이 적어 총액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 제한 - 급여가 심사기준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발급 제한 *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중 전년도 GNI 0.8배 이상 : 온라인쇼핑판매원, 양식기술자 등
	2. 주의해야할 경과규정 ① 기존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체류중인 **외국인요리사**에 대해서는

	'18. 1. 1.이후에는 현 규정을 적용하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허가 제한 ② '17. 8.1이전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하여 체류 중인 숙련기능인은 '19.1.1. 이후에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허가제한

- **(플랜트공학 기술자 자격요건)** 국내복귀기업의 해외법인에 고용된 자 중 △관련 분야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는 6개월 △❶전문학사 소지자, ❷해당 직종 기술 자격증 또는 ❸관련 수상 경력, 관련 언론보도 또는 ❹코트라 현지 KBC직원의 경력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가 있는 자는 2년 이상 국내 복귀기업 해외법인에서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함

 * 단, KOTRA 현지 KBC직원이 주재하고 있지 않은 공관에서는 영사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 제출

- **(업체당 고용허용인원 기준)**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 피보험자(3개월 평균) 수의 30%를 범위 내에서 허용인원으로 산정

24) 로봇공학 전문가 (2352)

○ **(직종설명)** 산업용 로봇을 가동시키기 위하여 특별기능에 따라 프로그램을 작성, 운영, 통제하는 로봇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자.

- 원자력 설비 및 장비, 정밀기구, 카메라 및 영사기, 기계적 기능의 의료장비를 연구하고 설계, 제조 또는 유지를 기획 지위하는 분야도 포함

○ **(도입 가능직업 예시)** 로봇공학 시험원. 단, 산업용로봇 조작원(85302)는 제외

○ **(고용추천서 발급)** 해당사항 없음 / 국내복귀기업의 로봇공학 전문가(필수) KOTRA

○ **(자격요건)** 별도 요건 적용, 국내·외 석사학위 이상

 * '18. 5월 신설시 내국인 고용보호를 위해 고용부에서 학력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여 학사학위자는 발급대상에서 제외됨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단, 국내복귀기업의 로봇공학 기술자는 별도 요건 적용)

○ **(국내복귀기업 특례)**

- **(자격요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를 발급받은 기업

- **(로봇공학 전문가 자격요건)** 국내복귀기업의 해외법인에 고용된 자 중 △관련 분야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는 6개월 △❶전문학사 소지자, ❷해당 직종 기술 자격증 또는 ❸관련 수상 경력, 관련 언론보도 또는 ❹코트라 현지 KBC직원의 경력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가 있는 자는 2년 이상 국내 복귀기업 해외법인에서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함

 * 단, KOTRA 현지 KBC직원이 주재하고 있지 않은 공관에서는 영사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 제출

- **(업체당 고용허용인원 기준)**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 피보험자(3개월 평균) 수의 30%를 범위 내에서 허용인원으로 산정

25) 자동차・조선・비행기・철도차량공학 전문가(S2353)

○ **(직종설명)** 차량의 내연기관, 차체, 제동장치, 제어장치, 기타 구성품에 관하여 연구, 설계 및 자문하는 자 /선체와 선박의 상부구조, 선박엔진 등에 관하여 연구, 설계 및

자문하고 이들의 개발, 건조, 유지 및 보수를 계획하고 감독하는 자 /항공기, 인공위성, 발사체(로봇)와 같은 비행체의 개발·제작·운용에 관하여 연구·설계 및 자문하며 이들의 제조 및 운용을 지휘, 통제, 조언하는 자 /기관차, 철도(고속철 포함)에 사용되는 기관을 연구, 설계 및 자문하며 이들의 제조 및 운영을 지휘, 통제, 조언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자동차 설계가, 자동차기계 기술자, 카 일렉트로닉스 기술자, 자동차엔진설계 기술자, 조선공학 기술자, 선박안전시스템 개발자, 선박배관설계 기술자, 조선의장 설계 기술자, 선체설계 기술자, TRIBON선박 설계 기술자, 해양구조설계 기술자, 조선배관 설계 기술자, 조선기장 설계 기술자, 항공기 설계가, 항공기기계 기술자, 인공위성 기술자, 비행체 기술자, 디젤기계 기술자, 가스터빈 기술자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국내복귀기업의 자동차·조선·비행기·철도차량공학 전문가(필수) KOTRA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단, 국내복귀기업의 자동차·조선·비행기·철도차량공학 전문가는 별도 요건 적용)

○ **(국내복귀기업 특례)**

- **(자격요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를 발급받은 기업

- **(자동차·조선·비행기·철도차량공학 전문가 자격요건)** 국내복귀기업의 해외법인에 고용된 자 중 △관련 분야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는 6개월 △❶전문학사 소지자, ❷해당 직종 기술 자격증 또는 ❸관련 수상 경력, 관련 언론보도 또는 ❹코트라 현지 KBC직원의 경력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가 있는 자는 2년 이상 국내 복귀기업 해외법인에서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함

 * 단, KOTRA 현지 KBC직원이 주재하고 있지 않은 공관에서는 영사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 제출

- **(업체당 고용허용인원 기준)**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 피보험자(3개월 평균) 수의 30%를 범위 내에서 허용인원으로 산정

26) 산업안전 및 위험 관리자(2364)

○ **(직종설명)** 산업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화학·석유, 석탄공업, 목재 및 가공업, 플라스틱·금속공업,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건설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농·축산·어업 등 분야에서 위험을 진단, 조사, 예방, 교육 등에 종사하며 산업재해 원인조사, 재발방지, 대책수립, 근로자의 안전 보건 교육 및 계도 개선 건의 등을 담당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산업안전 기술자, 안전관리 시험원, 노동안전 및 보건관리원, 전기설비 감리 시험원, 건물안전 관리원, 전기안전 및 보건 관리원, 안전관리 기술자, 차량안전 및 보건 관리원, 산업안전 시험원 및 교육자

5) 조선용접공(7430)

○ **(직종설명)** 조선 분야 등의 비철금속 성형 및 제조에 관한 숙련 기능을 보유한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조선분야 숙련용접공(Tig 용접, CO2용접, 알곤용접, 용접사상*)

* 사상 공정의 경우, 관련 직무·안전교육 이수 내역이 산업부 지정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투입 허용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별도 기준 적용

- **(고용업체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조선소, 선박관련 블록제조업 및 조선 기자재 업체*

* 조선업 전업률이 50% 이상임을 산업부 지정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 조선 기자재 업체(확인기관 및 확인절차 등 세부 사항은 산업부 장관이 정함)

▸최근 1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 단, 외국인력을 고용한 업체가 폐업한 경우, 동 업체를 승계하여 신규 설립한 업체의 경우 예외적으로 외국인 고용을 허용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 단,「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소규모 조선업체 특례 대상)의 경우 면제

▸최근 2년 이내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외국인력을 고용한 업체가 폐업한 경우, 동 업체를 승계하여 신규 설립한 업체의 경우 예외적으로 외국인 고용 허용)

※ 다만, 이탈자가 발생한 경우라도 초청업체가 업체 건전성(납세실적, 국민고용 유지 여부) 근로자 관리 의무 이행 사실 및 활용 능력을 입증하는 경우 이탈일로부터 2년 간 이탈 인원 수를 고용 허용인원에서 공제한 뒤 고용 허용

- **(외국인 고용비율)** 국민고용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조선업 E-7-3 외국인력 고용 허용

▸**(소규모 조선업체 특례)** 소규모 조선업체*의 경우, 내국인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최소 5명의 조선업 E-7-3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고, 연매출 20억 당 1명의 추가 고용을 허용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확인서'로 확인되는 기업

- **(임금요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

▸도입 3년차까지 '2,500만원 이상('24년 기준)'으로 완화된 임금요건 적용

※ 외국인의 경력·기량에 비례하는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한 기준으로, 신규 채용이 아닌 기 도입 인력(도입 2~3년차)의 임금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여야 함

○ **(도입 절차)**

- **(기량검증)** 산업통상부 지정 기관(예 :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기량검증단을 구성하여 조선 용접분야 현지 기량검증 실시 후 통과자들에게 기량검증 확인서 발급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조선해양플랜트과) ※ 필수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6항에 따라 추천서 발급 기준, 기량검증 절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함

○ **(자격요건)** 중급이상 조선용접공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 + 현지 기량검증 통과

- **(용접자격증)** 국내 조선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AWS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발급된중급**이상의 FCAW, GMAW, GTAW 용접기술 분야의 자격증(신원, 기량수준, 적용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발급처의 직인 또는 책임자의 서명 등이 포함된 출입증(또는 사원증), 시험결과지 및 재직증명서 등을 포함)으로 한정

 * AWS(미국용접협회), ASME(미국기계기술자협회), ISO(국제표준화기구), EN(유럽표준), 국제선급협회[한국선급(KR), 미국선급(ABS), 영국선급(LR), 노르웨이・독일선급(DNVGL) 등]

 ** 용접자세 중 아래보기(일반적으로 F, 1G로 표기) 및 수평(일반적으로 H, 2G로 표기)을 제외

○ **(유학생 특례)** 국내 대학에서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이 조선업체 취업이 확정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경우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

○ **(제출서류)** 국제선급회사 등 발급 자격증, 기량검증단 발급 기량검증확인서, 학위증(해당자) 추가

※ 송출국 정부에서 발행한 자격증 및 경력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를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하되, 사후관리 강화*

* 조선협회 주관으로 체류자 대상 한국어교육 및 기량 미달자에 대한 사내(위탁)기술교육을 실시하고, 휴・폐업 및 임금체불 등으로 정상근무가 어려운 경우 조선용접공 추가 채용이 필요한 관리우수업체로 재취업 유도

- **(사회통합프로그램)** 국내 입국 후 1년 이내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취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 여부 확인(유학생 특례 적용 대상자들은 이수 불필요, '24. 1. 1.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

- **(근무처 변경)** 근무처 변경은 휴·폐업, 경영악화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외국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며, 근무처 변경 허가 시 해당 외국인의 자격요건, 고용업체 기준, 업체당 허용인원 등은 사증발급 기준에 준하여 심사

※ 근무처 변경 시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발급서류(고용추천서 및 기업체 현장실사 보고서(부득이한 근무처 변경 시)) **필수**

6) 선박 전기원(76212)

○ **(직종설명)** 케이블 가설, 화재경보장치, 내부통신 시설 등의 선박 내 배선 및 장치를 설치하고 수리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선박전기원, 선박전기 수리원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별도 기준 적용

- **(고용업체 요건)** 산업부 장관으로부터 조선해양플랜트분야 고용추천을 받은 기업

- **(외국인 고용비율)** 국민고용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조선업 E-7-3 외국인력 고용 허용

▸**(소규모 조선업체 특례)** 소규모 조선업체*의 경우, 내국인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최소 5명의 조선업 E-7-3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고, 연매출 20억 당 1명의 추가 고용을 허용

*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확인서'로 확인되는 기업

- **(임금요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

▸도입 3년차까지 '2,500만원 이상('24년 기준)'으로 완화된 임금요건 적용

※ 외국인의 경력·기량에 비례하는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한 기준으로, 신규 채용이 아닌 기 도입 인력(도입 2~3년차)의 임금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여야 함

○ **(자격요건)** 아래 중 하나의 요건을 구비

①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해당분야 1년 이상 경력자

② 관련 분야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 **(기량검증 특례)**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기관(예 :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조선분야 전기설비 현지 기량 검증을 통과한 사람에 대해(기량검증확인서 확인) 경력 요건 완화

①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경력 면제

② 관련 분야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 해당 분야 2년 이상 경력

○ **(유학생 특례)** 국내 대학에서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이 조선업체 취업이 확정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경우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조선해양플랜트과) **※ 필수**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6항에 따라 추천서 발급 기준, 기량검증 절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함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사회통합프로그램)** 국내 입국 후 1년 이내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취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 여부 확인(유학생 특례 적용 대상자들은 이수 불필요, '24. 1. 1.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

- **(근무처 변경)** 근무처 변경은 휴·폐업, 경영악화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외국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며, 근무처 변경 허가 시 해당 외국인의 자격요건, 고용업체 기준, 업체당 허용인원 등은 사증발급 기준에 준하여 심사

※ 근무처 변경 시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발급서류(고용추천서 및 기업체 현장실사 보고서(부득이한 근무처 변경 시)) **필수**

- **(사전·사후 관리감독 강화)** 법무부·산업부 합동으로 국내·외 기량검증 과정, 체류·근무 현황을 점검하여 제도 남용을 방지

○ **(기타사항)** '22. 7. 1.부터 상시 운영

7) 선박 도장공(78369)

○ **(직종설명)** 도장용구를 사용해 페인트, 래커, 에나멜 등을 건축, 선박 등에 도장하는 자로서, 도장하기 위해 표면을 손질하거나 선박의 목조부분 및 내부장치를 도장하는 자 등이 포함됨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선박 도장공(도장 전처리, 도료 작업, 타이코트(서로 다른 도료 간 접착력 향상) 작업 등 도장 공정 전 과정 포함)

* 실무상 스프레이 사수, 터치업조 롤러, LQC(Line Quality Control) 등으로 지칭될 수 있음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별도 기준 적용

- **(고용업체 요건)** 산업부 장관으로부터 외국인 도장기술자 초청이 적합하다고 추천을 받은 업체

▸**(업종)**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종류가 '기타 선박 건조업', '선박구성 부분품 제조', '선박도장', '도장'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31113(선박 건조), 31114(선박구성부분품 제조), 42411(도장 공사업)

▸**(원청업체 협력)** 도장기술자의 초청 및 입국 후 관리를 위한 원청업체와의 협력 체계가 확인되는 업체

- **(외국인 고용비율)** 국민고용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조선업 E-7-3 외국인력 고용 허용

▸**(소규모 조선업체 특례)** 소규모 조선업체*의 경우, 내국인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최소 5명의 조선업 E-7-3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고, 연매출 20억 당 1명의 추가 고용을 허용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확인서'로 확인되는 기업

- **(임금요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

▸도입 3년차까지 '2,500만원 이상('24년 기준)'으로 완화된 임금요건 적용

※ 외국인의 경력·기량에 비례하는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한 기준으로, 신규 채용이 아닌 기 도입 인력(도입 2~3년차)의 임금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여야 함

○ **(자격요건)** 선박도장 관련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관련 분야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학력 : 선박도장 관련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소지

▸ 전공명 : 화학, 화학공학, 재료공학, 조선공학, 건축공학, 자동차공학, 기계공학
▸ 상기 전공명에 해당하지 않으나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공인 경우, 도장 관련 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한 경우 인정 가능
* 도장관련 과목(예시) : 건축재료 계획, 건축시공, 자동차튜닝, 도장실무 등

- 경력 : 도장 관련 분야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 근무

▸ 전문학사 : 5년 이상
▸ 학사 이상 : 1년 이상
▸ 경력 판단기준 : 해당업체의 업종, 담당직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

- 기량검증 특례 :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기관(예 :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도장분야 기량 검증을 통과한 자에 대해서는 경력 요건 완화

▸ 전문학사 : 2년 이상 경력
▸ 학사 이상 : 경력 면제
▸ 경력 판단기준 : 해당업체의 업종, 담당직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

- 유학생 특례 : 국내 대학에서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이 조선업체 취업이 확정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경우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

▸ 기량검증기관 : 산업부 지정기관 (예: 조선해양플랜트협회)
▸ 기량검증기준 : 산업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통과한 자
- (예-시험형) 관련 전공자가 기량검증 시험에 곧바로 응시하는 유형
- (예-교육형) 관련 전공자가 일정시간의 선박도장 분야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기량검증 시험에 응시하는 유형

○ **(추가 제출서류)** 산업부장관 업체 추천서, 기량검증통과자는 산업부 지정기관의 기량검증 확인서 추가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근무처 변경)** 근무처 변경은 휴·폐업, 경영악화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외국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며, 근무처 변경 허가 시 해당 외국인의 자격요건, 고용업체 기준, 업체당 허용인원 등은 사증발급 기준에 준하여 심사

※ 근무처 변경 시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발급서류(고용추천서 및 기업체 현장실사 보고서(부득이한 근무처 변경 시)) **필수**

- **(사회통합프로그램)** 국내 입국 후 1년 이내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취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 여부 확인(유학생 특례 적용 대상자들은 이수 불필요, '24.1.1.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

8) 항공기 정비원(7521)

○ **(직종설명)** 항공기(헬리콥터 포함)의 동력장치, 착륙장치, 조종 장치, 기체, 유압 및 기압 시스템 등의 고장여부, 범위, 정도 등을 파악하여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조립, 조정, 정비하는데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비행기 정비원, 헬리콥터 정비원

○ **(고용추천서 발급)** 국토교통부장관(항공기술과) ※ 필수

○ **(자격요건)** 일반요건 적용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